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 650호 2019. 11. 28.(목)**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19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남해군 조례 제2420호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21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조례 제2422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7
남해군 조례 제2423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조례 제2424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남해군 조례 제2425호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해군 조례 제2426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남해군 조례 제2427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6
---------------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42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군청~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63
남해군 고시 제2019-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7
남해군 고시 제2019-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8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53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9
남해군 공고 제2019-1537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70
남해군 공고 제2019-1541호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71
남해군 공고 제2019-154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	80
남해군 공고 제2019-1569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4
남해군 공고 제2019-159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	8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19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으로” 를 “등으로 인한”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전단 중 “전입세대” 를 “전입자” 로,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발행된” 을 “발행한”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주거자금 대출이자” 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8. “신혼부부” 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생아” 를 “자녀의” 로 하고, “거주하고 있는” 을 “있는” 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포함한다.” 를 “포함하며,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입세대” 를 “전입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를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입세대 주민세” 를 “주민세” 로, “제3조제3호가목” 을 “가목” 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세, 주택수리비 지원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나.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다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입자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전입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1의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규정은 2019년에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첫째아이: 3백만원 ·일시금30만원, 매월15만원×18회  ○둘째아이: 4백만원 ·일시금40만원, 매월15만원×24회  ○셋째아이 이상: 5백만원 ·일시금80만원, 매월20만원×21회	행정과
	출산축하선물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 축하선물 제공 ·지원품목: 내의, 목욕타올 등 ·지원금액: 6만원 상당	보건소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인 1백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1인 50만원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급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다태아 출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 지급	보건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지원횟수: 3회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보건소
다자녀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 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행정과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업료 등 지원 ·입학생: 입학금 + 수업료 ·재학생: 수업료	행정과
	남해사랑우대인증발급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 50% 할인	행정과

[별표 2]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전 입 지 원	전입축하금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1인: 10만원 상당 ·2인 이상: 30만원 상당 ·4인 이상: 70만원 상당	민원봉사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 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 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 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자 이율의 1.5%(최대 1백 만원 한도) ○지원횟수: 연1회. 대상자별 1회에 한함. ○지원기간: 최장 3년	행 정 과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개인균등분주민세 지원 ·지원기간: 2년간 ·지원금액: 부과금액 기준	재 무 과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빈집 을 매입·임대하여 수선 또는 철거한 세대의 대 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당 150만원 지원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 어 보조금 교부 결정된 보조사 업자에 한함	도시건축과
	영농정착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자가 농지 를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 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 결하여 경작하고자 신청 하는 경우	○귀농자당 10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에서 과수류 묘 목 또는 채소류 모종 현물 지 원 ·50만원 이내에서 영농에 필요 한 각종 자재 현물 지원 ○다만, 세대당 1건 1회에 한 함.	농축산과
	공영주차장 이 용 권 제 공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전입신고 건당 최대 1대 분 ·지원수량: 50매 (500원/1매)	건설교통과

# 남 해 군 공 보

(6) 제 650호

2019년 11월 28일

구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 급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 장): 50% 할인	행 정 과
	쓰 레 기 종량제봉투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1인 전입 : 10리터 30매 ·2인 이상 전입 : 10리터 60 매	환경복지과
전 입 학 생 지 원	전 입 초·중·고 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행 정 과
	전입대학생 지 원	조례 제3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 하는 경우 (다만, 지원기 간 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없어야 하 고, 입대, 휴학, 자퇴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는 지원하지 아니한 다.)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 (※학기별 30만원)  ○기숙사 외에 입주하는 경우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지원방법: 남해화폐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행 정 과



남해군 조례 제2420호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 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54-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
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죽방림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죽방림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휴장한다)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 등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죽방림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죽방림홍보관에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증받은 전시물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시설물이나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관광단지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1호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 등 교육사업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정책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 6.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대여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 자활지원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남해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⑥ 군수는 기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여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12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채무자등이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증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과 예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은 만기상환 또는 반환 시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 계좌로 유입하여 자활기금으로 활용한다.

④ 종전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2호

##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다문화가족의 학대,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교육 및 한국어 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사업
6.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과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 대표
4. 다문화가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등이나 그 배우자
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성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3호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5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4호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환경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최·주관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지역 및 관광개발에 관련된 전략계획 수립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text{ 이내}$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해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5호

##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의 조사구역 설정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3제2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신부자동차 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경남다누리 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6조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제19조의2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 다음에 장 번호와 제목 및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보칙

제23조(과징금) ① 군수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의 발부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준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확 인 서

1. 방 문 일 시 :           년           월           일

2. 방문차량번호 :

3. 방문시간 :           시간

4. 방문기관(부서) :

5. 방문목적 :

6. 방 문 자 : 남해군           (읍)면           리장

확인자 :

실과소장(인)

남해군 조례 제2426호

##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저상버스(低床bus)”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수단의 도입 및 운영 및 요금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통약자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이동편의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이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면접 등을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 구역 내 대중교통요금(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참석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신고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남 해 군 공 보

(42) 제 650호

2019년 11월 28일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 없음	
	가족 (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남해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 × 297mm

[뒤쪽]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 이동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000000-  
수 신 : 000 귀하( 00동 00번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영구장애 (        장애        급 )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장애 (        )		
차량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사유					

년        월        일

남해군수 (인)

남해군 조례 제2427호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2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7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남해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 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바. 남해군 지역 이외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남해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1명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 (초등학교 1명, 중·고등학교 1명)
  4. 학교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 있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공공급식

제12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3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 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단체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되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군 지역 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학교급식

제17조(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

제18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남해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9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지역 농산물을 포함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학교급식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유치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농산물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학교급식의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은 식자재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지역농산물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지원금을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식재료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4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2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부와 현지” 를 “공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약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앞면>

기 본 현 황

신청인	주소	경남 남해군 읍·면				
	성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택			핸드폰	
지급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 청 사 항

전입 정착 지원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기타

- 전입축하금
  -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빈집정비사업 대상자에 한함.)
  - 전입자 영농정착비
  - 주차장 이용권
  -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 쓰레기종량제봉투
  -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
  - 전입 대학생 지원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출산 장려 지원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출산 축하선물 <input type="checkbox"/> 산모 산후조리비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자녀 정보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관계			자녀 수	자녀 중 째	

다자녀 지원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학교명 :                    학교) <input type="checkbox"/>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자녀 정보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자녀			자녀 수	자녀 중 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1. 재학증명서 1부.
-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읍·면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지급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현황(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출산장려시책지원(신생아성명, 생년월일, 관계, 자녀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해군에서 수행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읍·면장 귀하

확인기관	확 인 내 용		해당여부	확인자
읍·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전입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
	출산장려지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성명 (인)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입 학생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핸드폰: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전 거주지	
	전거주지 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유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구입(신축)	<input type="checkbox"/> 임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금 액	원	면적	m <sup>2</sup>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 출 금 액	원	
		대 출 잔 액	원	
	대 출 조 건	연 대출이자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 융 기 관		지급계좌번호	
	신 청 금 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세대원 각 1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42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5.

남 해 군 수

# 남 해 군 공 보

(64) 제 650호

2019년 11월 28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71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 2018.9.27. ~ 2020.2.29.

5.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읍 아산리	김O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11	대	3	3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09-2	도	684	139		남해군	-	

# 남 해 군 공 보

(66) 제 650호

2019년 11월 28일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 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럭스레트	69	㎡	남해읍 서변리	이O봉	대구 달서구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가추1	벽체이용 스레트	6	㎡						
			가추2	선라이트	12	㎡			대구 동구	이O숙	가압류	
			가추3	목조스레트	18	㎡						
			화장실등	블럭스레트	15.75	㎡			서울 종로구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가압류	
			아래채	블럭스레트	40.5	㎡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	㎡			대구 수성구	이O울	근저당	
			물탱크	철재지지대 포함	1	식						
			대문	새시조	1	식			대구 수성구	정O수	근저당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						
			아궁이		1	식			서울 강남구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석류	R25	1	주						
			화단	2*5	1	식						

남해군 고시 제2019 - 14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금양천)
2. 성 명 : 강치0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4. 점용목적 : 성토 및 형질변경(부지평탄화)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 외 1필지
6. 점용면적 : 327㎡
7. 점용기간 : 2019. 11. 15. ~ 2020. 11. 14.

남해군 고시 제2019 - 15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윤형0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4. 점용목적 : 성탄 빛거리 조성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번지(아산교에서 교회다리까지)
6. 점용면적 : 350㎡
7. 점용기간 : 2019. 12. 1. ~ 2020. 1. 3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53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명)	조원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9
소하천명		심천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남해읍 심천리 1287-1, 834-1		
	면적	4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19. 11. 14. ~ 2020. 11. 13.(1년)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19-1537호

###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302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 물	창선면 사포지 선	763,000	2019.11.15 ~ 2029.11.14	남해군 창선면	사포어촌계	2019.11.15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78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면 사포지선	810,000	1999.11.15. ~2019.11.14	남해군 창선면	사포어촌계	면허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19 - 1541호

##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공람 · 공고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합니다.

2019. 11. 28.

###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3.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1>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52,350	증)3,740	56,090	27.3	
	체육시설	28,721	증)5,003	33,724	16.4	
	소공원	2,023	-	2,023	1.0	
	승마장	10,567	-	10,567	5.1	
	주차장	2,780	-	2,780	1.4	
	조경·완충녹지	8,259	감)1,263	6,996	3.4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27,590	-	27,590	13.4	
	진입및상징광장	8,030	-	8,030	3.9	
	특산물판매장	2,850	-	2,850	1.4	
	먹거리장터	3,590	-	3,590	1.7	
	휴게음식점	3,000	-	3,000	1.5	
	주차장	850	-	850	0.4	
	자동차야영장	3,080	-	3,080	1.5	
	관리도로	1,980	-	1,980	1.0	
간이역	4,210	-	4,210	2.0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15,640	감)3,740	11,900	5.8	
	주차장	7,410	-	7,410	3.6	
	하수처리시설	3,740	감)3,740	-	-	
	도로	4,490	-	4,490	2.2	
녹지용지	녹지소계	109,820	-	109,820	53.5	
	녹지(유수지)	91,710	-	91,710	44.7	
	조경·완충녹지	18,110	-	18,110	8.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6	중로3-1	상신리 1-1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 남 해 군 공 보

(74) 제 650호

2019년 11월 28일

##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2,780	-	2,78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1답 일원	850	-	85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잡 일원	5,230	-	5,23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4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2,180	-	2,18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3)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상죽리 10-21답 일원	3,740	감)3,740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처리시설	○ 폐지	○ 지구 내 발생 오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하므로 기 결정된 하수처리시설을 폐지하고자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205,400	-	205,400	
-	I	52,350	증)3,740	56,090	I-1	창선면 상죽리 10-12번지 일원	28,721	증)5,003	33,724	체육시설
					I-2	창선면 상죽리 10-8번지 일원	2,023	-	2,023	체육시설
					I-3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0,567	-	10,567	체육시설
					I-4	창선면 상죽리 10-10번지 일원	2,780	-	2,780	체육시설
					I-5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8,259	감)1,263	6,996	체육시설
-	II	27,590	-	27,590	II-1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8,030	-	8,030	관광· 휴양시설
					II-2	창선면 상신리 1-8번지 일원	2,850	-	2,850	관광· 휴양시설
					II-3	창선면 상신리 1-5번지 일원	3,590	-	3,590	관광· 휴양시설
					II-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00	-	3,000	관광· 휴양시설
					II-5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850	-	850	관광· 휴양시설
					II-6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80	-	3,080	관광· 휴양시설
					II-7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980	-	1,980	관광· 휴양시설
					II-8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	III	15,640	감)3,740	11,900	III-1	창선면 상죽리 10-21번지 일원	3,740	감)3,740	-	공공시설
					II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	4,490	공공시설
					III-3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	5,230	공공시설

					Ⅲ-4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2,180	-	2,180	공공시설
-	IV	109,820	-	109,820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91,710	-	91,710	녹지
					IV-2	창선면 상신리 343번지 일원	6,890	-	6,890	녹지
					IV-3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220	-	5,220	녹지
					IV-4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6,000	-	6,000	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진입 및 상징광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특산물판매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먹거리 장터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색 채	-		
				건 축 선	-		
III	-	III-1	-	용 도	지정용도	하수처리시설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남해군 공고 제2019 - 1544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화전도서관~봉황산)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 화전도서관~봉황산) 개설공사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2번지 외 12필지(붙임 참조)
3. 출입기간 : 2019. 11. 28.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2019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화전도서관~봉황산)개설공사

용 지 조 서

2019. 08

남 해 군

편 입 용 지 조 서 집 계 표

구분 지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공부면적	편입면적	
도	3	3,613	169	3	3,613	169				
구	1	958	29	1	958	29				
대	6	2,099	702				6	2,099	702	
답	1	2,011	462				1	2,011	462	
전	2	2,265	221				2	2,265	221	
합계	13	10,946	1,583	4	4,571	198	9	6,375	1,385	

편 입 용 지 조 서

순번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건의외 권리자
							주소	성명	
1	남해읍	아산리	352	도	989	131		남해군	
2	"	"	351-2	답	2,011	46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0-309	이 * 윤	
3	"	"	350-4	대	372	4	남해읍 아산리 350-4	장 * 정	
4	"	"	350-1	도	135	6		남해군	
5	"	"	1425	도	2,489	32		국(국토교통부)	
6	"	"	1421-4	구	958	29		국(농림축산식품부)	
7	"	"	256-1	대	238	50	남해읍 아산리 258	남해자연원	
8	"	"	257	대	53	53	남해읍 아산리 258	남해자연원	
9	"	"	259-2	대	615	172	남해읍 아산리 258	남해자연원	
10	"	"	258-3	대	256	81	남해읍 아산리 258	남해자연원	
11	"	"	259-1	대	565	342	남해읍 아산리 258	남해자연원	
12	"	"	261	전	1,250	1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0-309	이 * 윤	
13	"	"	262	전	1,015	9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0-309	이 * 윤	
					10,946	1,583			

남해군 공고 제2019-1569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남 해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조항 삭제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2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pj3054@korea.kr
- 2)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3) 팩스 : 055-860-37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전화 : 055-860-3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아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생 략)</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lt;단서 삭제&gt;</u></p> <p>제4조(기능)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9 - 1594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22호,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 개설공사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76번지 외 15필지(붙임 참조)
3. 출입기간 : 2019. 11. 28.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지 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전	4	196			4	196	
답							
대	9	415	1	84	8	331	
임							
잡							
유							
묘	1	172			1	172	
구							
도	2	240	2	240			
제							
천							
과							
철							
목							
주							
염							
공 장							
학							
수 도							
공 원							
운 동							
유 원							
종 교							
사 적							
계	16	1,023	3	324	13	699	

